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집

2007. 7. 6.



신지식·친환경·한국농업

농림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1976.12.31 法律 第2962號)</p> <p>改正 1978.12. 5 法律 第3118號 1980. 1. 4 法律 第3248號 1986.12.31 法律 第3885號 1987.12. 4 法律 第3982號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1990. 4. 7 法律 第4228號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1.12.31 法律 第4461號 (기금관리기본법) 1993. 6.11 法律 第4554號 1994.11. 1 法律 第4785號 1994.12.31 法律 第4847號 1996.12.12 法律 第5170號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1997.12.31 法律 第5454號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 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0. 1.28 法律 第6223號 일부개정 2002.12.30 法律 第6836號 일부개정 2004.12.31 法律 第7311號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7호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35호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78호</p>	<p style="text-align: center;">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1977. 7.22 대통령령 제8635호)</p> <p>개정 1979. 5.11 대통령령 제 9460호 1982.12.27 대통령령 제10961호 1984.12.31 대통령령 제11585호 1987. 6.23 대통령령 제12183호 1990. 8. 8 대통령령 제13063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1991. 4.30 대통령령 제13365호 전문개정 1994. 5. 4 대통령령 제14243호 개정 1995. 1.28 대통령령 제14515호 1996. 6.29 대통령령 제15087호 (인삼산업법시행령)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해양수산물부위 및 그소속기관직제 및 재정경제원과 그소속기관직제) 1997.11.29 대통령령 제15519호 전문개정 2000. 6. 7 대통령령 제16834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4호 일부개정 2005.6.23 대통령령 제18877호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 일부개정 2007.7.2 대통령령 제 20148호</p>	<p style="text-align: center;">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1977. 8.12 농수산부령 제695호)</p> <p>개정 1983. 4.26 농수산부령 제 888호 1998. 5.16 농수산부령 제1003호 전문개정 1994. 5.14 농림수산부령 제1139호 개정 1994.10.20 농림수산부령 제1158호 1995. 1.28 농림수산부령 제1170호 1995. 3. 8 농림수산부령 제1182호 1995. 6.30 농림수산부령 제1197호 1997.12.20 농림부령 제1268호 해양수산부령 제 37호 전문개정 2000. 6.23 농림부령 제1366호 해양수산부령 제 164호 일부개정 2005. 6.28 농림부령 제1495호 해양수산부령 제 295호 일부개정 2006.6.9 농림부령 제339호 공동부령 제339호 일부개정 2007.7.6 농림부령 제1564호 해양수산부령 제375호</p>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第1章 總 則</p> <p>第1條 (目的) 이 法은 農水産物의 원활한 流通과 적정한 價格을 유지하 게 함으로써 生産者와 消費者의 이 익을 보호하고 國民生活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 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7.1.3></p> <p>1. "農水産物"이라 함은 農産物·畜 産物 및 水産物과 林産物중 農林 部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2. "農水産物都賣市場"이라 함은 特別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가 糧穀類·靑果類·花卉類·鳥獸 肉類·魚類·貝介類·海藻類 및 林産</p>	<p>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農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農수산물도매 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 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7.2></p> <p>1. 양곡부류 : 米곡·맥류·두류·조·좁 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참깨 및 땅콩</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임산물) 農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임산물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p> <p>1. 목과류 : 밤·잣·대추·호도·은행 및 도토리</p> <p>2. 버섯류 : 표고·송이·목이 및 팽 이</p> <p>3. 한약재용 임산물</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目の 전부 또는 일부를 都賣하게 하기 위하여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農林部長官이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の 許可를 받아 管轄區域에 開設하는 市場을 말한다.</p> <p>3. "中央都賣市場"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開設한 農水産物都賣市場중 당해管轄區域 및 그 隣接地域의 都賣의 中心이 되는 農水産物都賣市場으로서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4. "地方都賣市場"이라 함은 中央都賣市場외의 農水産物都賣市場을 말한다.</p> <p>5. "農水産物共販場"이라 함은 地域農業協同組合, 地域畜産業協同組合,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 조</p>	<p>2.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薯類)·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잡곡중 신선한 것</p> <p>3. 축산부류 : 조수육류 및 난류</p> <p>4.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 및 젓갈류</p> <p>5. 화훼부류 : 절화·절지·절엽 및 분화</p> <p>6.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p> <p>7. 기타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p>	<p>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앙도매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개정 2007.7.6></p> <p>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p> <p>2.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p> <p>3.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p> <p>4. 인천광역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관련 단체와 公益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하 "公益法人"이라 한다)이 農水産物을 都賣하기 위하여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開設·운영하는 事業場을 말한다.</p> <p>6.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이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共販場을 開設할 수 있는 者외의 者(이하 "民間人등"이라 한다)가 農水産物을 都賣하기 위하여 第47條의 規定에</p>	<p>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p> <p>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7.2></p> <p>1.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p> <p>2.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p> <p>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말한다.</p>	<p>5.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p> <p>6.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p> <p>7. 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p> <p>8. 대전광역시 노은 농산물도매시장</p> <p>9.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p> <p>10.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p> <p>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에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의하여 市·道知事の 許可를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地域에 開設하는 市場을 말한다.</p> <p>7. "都賣市場法人"이라 함은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水産物都賣市場의 開設者로부터 指定을 받고 農水産物을 委託받아 上場하여 都賣하거나 이를 買受하여 都賣하는 法人(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賣市場法人의 指定을 받은 것으로 보는 公共出資 法人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8. "市場都賣人"이라 함은 第36條 또는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水産物都賣市場 또는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의 開設者로부터 指定을 받고 農水産物을 買受 또는 委託받아 都賣하거나 賣買를 仲介하</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는 營業을 하는 法人을 말한다.</p> <p>9. "仲都賣人"이라 함은 第25條·第44條·第46條 또는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水産物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 또는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의 開設者의 許可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各目的의 營業을 하는 者를 말한다.</p> <p>가. 農水産物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 또는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에 上場된 農水産物을 買受하여 都賣하거나 賣買를 仲介하는 營業</p> <p>나. 農水産物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 또는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의 開設者로부터 許可를 받은 非上場農水産物을 買受 또는 委託받아 都賣하거나 賣買를 仲介하는 營業</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0. "매매참가인"이라 함은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p> <p>11. "產地流通人"이라 함은 第29條·第44條·第46條 또는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水産物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 또는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의 開設者에게 登録하고, 農水産物을 蒐集하여 農水産物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 또는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에 出荷하는</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營業을 하는 者를 말한다.</p> <p>12. "農水産物綜合流通센터"라 함은 農水産物의 出荷經路를 多元化하고 物流費用을 節減하기 위하여 農水産物의 蒐集·포장·加工·보관·輸送·販賣 및 그 情報處理 등 農水産物의 物流活動에 필요한 施設과 이와 관련된 業務施設을 갖춘 事業場을 말한다.</p> <p>13. "경매사"라 함은 제27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規定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第3條 (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이 法</p>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에 의한 農水産物都賣市場(이하 "都賣市場"이라 한다)·農水産物共販場(이하 "共販場"이라 한다)·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이하 "民營都賣市場"이라 한다) 및 農水産物綜合流通센터(이하 "綜合流通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3></p> <p>第2章 農水産物の 生産調整 및 出荷調整</p> <p>제4조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①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p>	<p>제4조(주산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의 지정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로 한다. <개정 2007.7.2></p>	<p>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p>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p> <p>③주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이를 지정한다.</p> <p>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 일 것</p> <p>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주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p> <p>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주산지의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7.2></p> <p>제5조(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의 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p> <p>제6조 삭제<2007.7.2></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p> <p>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p> <p>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5條(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需給安定을 위하여 價格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氣象情報·生産面積·作況·在庫物量·消費動向·海外市</p>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場情報 등을 調査하여 이를 分析한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p> <p>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그 밖에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p> <p>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관측업무 또는 수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부</p>		<p>제4조(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실시자) 법 제5조제2항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7.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 4. 기타 생산자조직 등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p>제5조(농업관측위원회의 구성) ①법</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농업관측위원회 또는 수산업관측위원회를 두며, 농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p>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觀測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과 農業觀測專擔機關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p>		<p>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5.6.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부 투융자평가통계관·농산물유통국장·축산국장 2. 재정경제부·기상청 및 농촌진흥청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의 임직원중 해당 기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p> <p>4. 농업인·농림관련단체 및 소비자 보호관련단체의 임직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p> <p>5. 농업관련 대학의 교수 기타 농업관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p> <p>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6.28></p> <p>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관측의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기본방향 2. 품목별 생산·수급 및 가격 등에 관한 중·장기 동향 및 전망 등 3. 기타 농업관측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6條 (契約生産)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주요 農水産物의 원활한 需給과 적정한 價格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림수협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生産者團體"라 한다) 또는 農水産物需要者와 生産者간에 契約生産 또는 契約出荷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p>	<p>제7조(계약생산의 생산자관련 단체) 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7.2> 1.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p>	<p>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농업관측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측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②농업관측전담기관의 업무범위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2007.1.3> 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生産契約 또는 出荷契約을 체결하는 生産者團體 또는 農水産物需要者에 대하여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契約金の 貸出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p>	<p>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중 2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p> <p>2. 제3조제1항 각 호의 자</p> <p>3.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어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p> <p>4. 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체 중 2</p>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7條 (自助金の 積立支援)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生産者團體가 農水産物の 販路擴大, 需給調節 및 價格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造成·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生産者團體에 대하여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서 補助金を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2004.12.31, 2006.12.28, 2007.1.3></p>	<p>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p> <p>제8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생산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는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당해 농수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당해 자조금조성단체의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助金의 造成方法, 보조대상이 되는 農水産物과 補助金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p> <p>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협약이나 유통조절명령(당해 농수산물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을 이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p> <p>5. 당해 농수산물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 및 당해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간의 유통정보화추진을 위한 사업</p> <p>6. 출하조절 등 당해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은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거나 생산자조직이 정비되어 있는 등 자조금의 조성이 용이</p>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한 농수산물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이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품목을 하나의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으로 정할 수 있다.</p> <p>② <삭제 2005.7.1></p> <p>③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이 생산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생산규모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p>제8조(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5.6.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사업 3. 명칭 4. 사무소의 소재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p> <p>④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농업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에 한한다) 중 해당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되, 연간 자조금 조성금액은 그 구성원이 생산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연간 생산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조금조성단체의 대표성·조직화정도·사업역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등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생산액의 산정기준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구성원의 자격 6. 구성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구성원의 탈퇴·제명시의 납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자조금의 조성방법·납입금액 및 수납장소 9. 자조금의 용도 및 사용방법 10.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 13. 기타 자조금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2007.7.2></p> <p>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자조금의 사용목적 및 사용계획 3. 자조금의 조성규모 및 조성방법 4. 자조금의 사용액 및 사용내역 <p>⑥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사원인 법인에 한한다)이 제8조 및 이 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조금조성단체에 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8條 (價格豫示)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需給調節과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 과종기 또는 수산물의 種묘입식(種苗入植)시기이전에 生産者의 보호를 위한 下限價格(이하 "豫示價格"이라 한다)을 豫示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p> <p>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示價格을 결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 농업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관측의 결과, 豫想經營費, 地域別 豫想生産量 및 豫想需給狀況 등을</p>	<p>있다.</p>	<p>제9조(가격예시대상품목) 법제8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주요농산물"이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을 말한다.</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p> <p>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示價格을 결정하는 때에는 미리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p> <p>④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價格을 豫示한 경우에는 豫示價格을 支持하기 위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契約生産 또는 契約出荷의 獎勵,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收買 및 처분,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流通協約 및 流通調節命令,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備蓄事業 등을 連繫하여 적절한 施策을 추진하여야 한다.</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개정 2004.12.31></p> <p>第9條 (過剩生産時의 生産者保護)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菜蔬類 등 貯藏性이 없는 農水産物의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生産者 또는 生産者團體로부터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당해 農水産物을 收買할 수 있다. 다만, 價格安定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에서 이를 收買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買한 農水産物은 이를 販賣 또는 輸出하거나 社會福祉團體에 寄贈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10조(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을 수매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확 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이를 수매할 수 있으며, 수매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 2.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收買 및 처분에 관한 業務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산림조합중앙회·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農林水協中央會”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農水産物流通公社(이하 “農水産物流通公社”라 한다)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p> <p>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收買·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9조의2 (물수농산물등의 이관) ① 농림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및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물수</p>	<p>성이 없는 농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p> <p>③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수매·처분의 위탁 및 비용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9조의2(물수농산물등의 인수)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수농산물등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처분대행기관의 장(이하 “처</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 받을 수 있다.</p> <p>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관 받은 몰수농산물등을 매각·공매·기부·소각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공매대금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p> <p>④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⑤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p>		<p>분대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인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7.6></p> <p>② 제1항에 따른 인수통보를 받은 처분대행기관장은 이관받은 품목의 품명·규격·수량 및 성상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인수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7.6></p> <p>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처분) ① 농림부장관은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대행기관장에게 이를 소각·매몰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7.7.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시장의 수급조절 또는 가격안정에 필요한 경우 2.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상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로 정한다.</p> <p>第10條 (流通協約 및 流通調節命令) ①주요 農水産物의 生産者, 産地流通人, 貯藏業者, 都·小賣業者 및 消費者 등(이하 "生産者등"이라 한다)의 代表는 당해 農水産物의 自</p>	<p>제11조(유통조절명령)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조절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이유(수급·가격·소득의 분석 자</p>	<p>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처분대행기관장에게 매각·공매·기부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7.7.6> ③ 처분대행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매각·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인수·보관 및 처분에 소요된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매각·공매 대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7.7.6></p> <p>제10조(유통명령의 대상품목)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발할 수 있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호의 농수산물중 농림부장관 또는</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律的인 需給調節과 品質向上을 위하여 生産調整 또는 出荷調節을 위한 協約(이하 "流通協約"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p> <p>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腐敗·變質되기 쉬운 農水産物로서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農水産物에 대하여 현저한 需給不安定을 解消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生産者등 또는 生産者團體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를 거쳐 일정 기간동안 일정 地域의 당해 農水産物의 生産者등에 대하여 生産調整 또는 出荷調節을 하도록 하는 流通調節命令(이하 "流通命令"이라 한다)을 발할 수 있다.</p>	<p>료를 포함한다) <개정 2007.7.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대상품목 3. 기간 4. 지역 5. 대상자 6.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7. 명령이행확인의 방법 및 명령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8. 사후관리 기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수산물 2. 생산이 전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 <p>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능력 등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명령 대상품목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2조제1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③流通命令에는 流通命令을 발하는 이유, 對象品目, 對象者, 流通調節方法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生産者 등 또는 生産者團體가 流通命令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要請書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流通專門家の 意見收斂節次를 거치고 당해 農水産物の 生産者등의 代表나 당해 生産者團體의 在籍會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p> <p>⑤제2항의 規定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항의 規定에 의한 유통조절추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생산자등</p> <p>2. 제10조의 規定에 의한 유통명령 대상품목인 농수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법 제6조의 規定에 의한 생산자단체</p>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청자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명령요청서를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자 대표 등에게 발송하여 10일 이상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7.6></p> <p>제11조의2(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개정 2007.1.3></p> <p>第11條 (流通命令의 執行)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流通命令이 이행될 수 있도록 流通命令의 내용에 관한 弘報, 流通命令 違反者에 대한 制裁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p> <p>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당해 農水産物의 生産者등의 組織 또는 生産者團體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命令의 執行業務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第12條 (流通命令 履行者에 대한 지원 등)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流通協約 또는 流通命令</p>		<p>시한다. <신설 2007.7.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목별 특성 2. 법 제5조에 따른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과 예상 공급량 <p>제12조(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명령을 요청하고자 하는 생산자등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명령 대상품목의 생산자, 산지 유통인, 저장업자, 도·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여 유통명령의 요청 및 유통조절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위원회(이하 "유통조절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유통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수산물의 주요 생산지에 유</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을 이행한 生産者등이 당해 流通協約이나 流通命令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損失에 대하여는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이를 補填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p> <p>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流通命令의 執行業務의 일부를 수행하는 生産者등의 組織이나 生産者團體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規定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제2항의 規定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p>		<p>통조절추진위원회의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p> <p>②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p> <p>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생산·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13條 (備蓄事業 등)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農水産物(쌀과 보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의 需給調節과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가격안정기금 또는 水産발전기금으로 農水産物을 備蓄하거나 農水産物의 出荷를 約定하는 生産者에게 그 代金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出荷를 調節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備蓄用 農水産物은 生産者 및 生産者團體로부터 收買하여야 한다. 다만, 價格安定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에서 收買하거나 輸入할 수 있</p>	<p>제12조(비축사업 등의 위탁)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농수산물의 비축 또는 출하 조절사업(이하 "비축사업등"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축농수산물의 수매·수입·포장·수송·보관 및 판매 2. 비축농수산물의 확보를 위한 재배·양식·선매계약의 체결 3. 농수산물의 출하약정 및 선급금의 지급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산 <p>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다.</p> <p>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備蓄用 農水産物을 輸入함에 있어서 國際價格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p> <p>④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農林水協中央會 또는 農水産物流通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p> <p>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備蓄用 農水産物의 收買·輸入·관리 및 販賣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농수산물의 품목 및 수량 2. 대상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및 가격 3. 대상농수산물의 판매방법·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p>제13조(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관리)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개산액을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한다)에서 당해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비축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②비축사업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사업등을 위한 자금(이하 “비축사업등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비축사업등의 실시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계리하여야 한다.</p> <p>③비축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하여야 한다.</p> <p>제14조(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 ①비축사업등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구매·판매 등에 관한 사업관리비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사업등을 위탁한 경우 비축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비축사업등자금의 관리비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p> <p>②비축사업등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농수산물의 감모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안에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p> <p>③화재·도난·침수 등의 사고로 인하여 비축한 농수산물이 멸실·훼손</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14條 (過剩生産時의 生産者保護 등 사업의 損失處理)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收買와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備蓄事業의 施行에 따라 생기는 減耗, 價格下落, 販賣·輸出·寄贈 기타의 처분으로 인한 原價損失 및 輸送·포장·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管理費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費用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4.12.31></p>	<p>손·부패 또는 변질된 때의 피해에 대하여는 비축사업실시기관이 이를 변상한다.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기금에서 손비로 처리한다.</p>	

농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15條 (農産物의 輸入推薦 등)①世界貿易機構設立을위한나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讓許表상의 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讓許稅率로 輸入하는 農産物중 다른 法律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農産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의 輸入에 대한 推薦業務를 農林部長官이 指定하는 非營利法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品目別推薦物量·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長官이 정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産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사용용도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輸入推薦申請을 하여야 한</p>		<p>제13조(농산물의 수입추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세법 시행령」 제5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p>②농림부장관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 2.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판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다.</p> <p>④農林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對象農産物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品目の 農産物을 第13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備蓄用農産物로 輸入하거나 生産者團體를 지정하여 輸入하여 販賣하게 할 수 있다.</p> <p>第16條 (輸入利益金の 徵收 등)①農林部長官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추천을 받아 農産物을 輸入하는 者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品目の 農産物을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內價格과 輸入價格간의 差額의 범위 안에서 輸入利益金を 賦課·徵收할 수 있다.</p>		<p>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 오렌지·감귤류</p> <p>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 :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을 소정의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p>		<p>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 또는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p> <p>2. 참고됨 :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p> <p>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농림부장관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3章 農水産物都賣市場</p> <p>第17條 (都賣市場의 開設 등) ① 都賣市場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部類別로 또는 2이상의 部類를 綜合하여 中央都賣市場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開設하고, 地方都賣市場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가 開設한다. <개정 2007.1.3></p> <p>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中央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市가 地方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3></p>	<p>제15조(도매시장의 개설)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은 양곡부류·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2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p> <p>제16조(도매시장의 명칭)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p> <p>제15조(도매시장의 개설허가)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권자(이하 "개설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소이전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개설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한 때에는 동조제4항의</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賣市場의 開設許可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賣市場開設許可申請書에 業務規程과 運營管理計劃書を 첨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權者(이하 "開設許可權者"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p> <p>④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業務規程과 運營管理計劃書を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p> <p>⑤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業務規程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開設許可權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p>		<p>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당해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6조(업무규정) ①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7.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2. 거래품목 3.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가 地方都賣市場의 業務規程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p> <p>⑥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都賣市場을 閉鎖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3月前에 開設許可權者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地方都賣市場을 閉鎖하는 경우에는 그 3月前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p> <p>⑦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規程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運營管理計劃書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p>		<p>지정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p> <p>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p> <p>6. 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p> <p>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p> <p>8. 법 제25조의2에 따라 법인인 중도매인이 다른 법인인 중도매인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거래규모, 거래보증금 등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p> <p>9.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p> <p>10.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신고 및 출하예약에 관한 사항</p> <p>1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거래 및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에 관한 사항</p> <p>12. 법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p> <p>1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의 특례에 관한 사항</p> <p>14.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에 관한 사항</p> <p>15.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공시에 관한 사항</p> <p>1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시장도매인의 적정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p> <p>17. 법 제36조의2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다른 시장도매인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시장도매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p>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p> <p>18. 법 제38조제4호에 따른 최소 출하량의 기준에 관한 사항</p> <p>19. 법 제38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p> <p>20.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 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에 관한 사항</p> <p>2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 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방법과 대금지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 등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p> <p>2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도매시장사용료, 부수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쓰레기유발 부담금의 요율</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23.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방도매 시장의 운영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p> <p>24.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p> <p>25.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p> <p>26. 법 제78조의2 및 영 제36조의2 제6항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심의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p> <p>2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경매사의 수에 관한 사항</p> <p>28.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에 관한 사항</p> <p>29.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성</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립최저가격제시에 관한 사항</p> <p>3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입하품 등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p> <p>3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p> <p>32.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33.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3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35. 제38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36.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p> <p>37. 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38.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p> <p>제17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매시장의 대지·건물 기타 시설의 종류·규모·구조 및 배치상황 2. 개설에 소요된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계획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계획</p> <p>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계획,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의 설립계획 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의 지정계획</p> <p>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허가계획</p> <p>6.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역업무의 효율화방안</p> <p>7. 도매시장 개설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p> <p>8. 당해 지역의 수급실적과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p> <p>9. 당해 지역의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18條 (開設區域) 都賣市場의 開設區域은 都賣市場이 開設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의 管轄區域으로 한다. 다만,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당해 地域에 있어서의 農水産物의 원활한 流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都賣市場의 開設區域에 인접한 일정 區域을 그 都賣市場의 開設區域으로 編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p>第19條 (許可基準)①開設許可權者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許可한다. <개정</p>		<p>"라 한다)별 거래상황과 거래전망에 관한 사항</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2007.1.3></p> <p>1. 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場所가 農水産物去來의 中心地로서 적절한 位置에 있을 것</p> <p>2. 第6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고 있을 것</p> <p>3. 삭제 <2007.1.3></p> <p>4. 運營管理計劃書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實現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p> <p>②開設許可權者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依하여 要求되는 施設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一정한 기간 內에 이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開設許可를 할 수 있다.</p> <p>第20條 (開設者의 義務)①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去來關係者의 便益과 消</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費者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都賣市場施設의 整備·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競爭促進과 公正한 去來秩序의 확립 및 環境改善 3. 商品性向上을 위한 規格化, 포장개선 및 鮮度維持의 촉진 <p>②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投資計劃 및 去來制度改善方案 등을 포함한 對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p> <p>第21條 (都賣市場의 관리)①都賣市場의 開設者는 所屬公務員으로 구성된 都賣市場管理事務所(이하 "管理事務所"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p>		<p>제18조(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p>②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管理事務所 또는 市場管理者로 하여금 施設物管理, 去來秩序維持, 流通從事者의 指導·監督 등에 관한 業務範圍를 정하여 당해 都賣市場 또는 그 開設區域안의 都賣市場의 管理業務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第22條 (都賣市場의 운영)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에 그 施設規模·去來額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中央都賣市場에는 部類마다 都賣市場法人을 두어야 한다.</p>		<p>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지도·감독 4.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 또는 제공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의 관리 5. 도매시장의 정산창구에 대한 관리·감독 6. 법 제4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사용료·부수시설사용료 및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7.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23條 (都賣市場法人의 지정)①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部類別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指定有效期間을 設定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p>②都賣市場法人의 株主 및 任·職員은 당해 都賣市場法人의 業務와 競合되는 都賣業 또는 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이하 "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p>	<p>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p> <p>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 法人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法人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部類의 都賣業務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知識과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業務에 2年이상 종사한 經驗이 있는 業務執行擔當 任員이 2人이상 있을 것 2. 任員중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가 없을 것 3. 任員중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나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가 없을 것 4. 任員중 第82條第2項의 規定에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개정 2007.7.2>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07.7.2> 6.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개정 2007.7.2> <p>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업</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의한 都賣市場法人의 指定取消處 分の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者가 없을 것</p> <p>5.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 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p> <p>④都賣市場法人이 지정후 第3項第 1號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月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p> <p>⑤都賣市場法人은 그 任員이 第3 項第2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 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 에는 당해 任員을 지체없이 解任하 여야 한다.</p> <p>⑥都賣市場法人의 指定節次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 領令으로 정한다.</p>	<p>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정하 여야 한다.</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3조의2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①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의 승인을 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③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요건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第24條 (公共出資法人)①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의 효율적인 管理·운영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p>		<p>제18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인수·합병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합병 등기신청 이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법」 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계약서 사본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한 都賣市場法人에 갈음하여 그 業務를 수행하게 할 法人(이하 "公共出資法人"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p> <p>②公共出資法人에 대한 出資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한한다. 이 경우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者에 의한 出資額의 合計가 總出資額의 100分の 50을 초과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地方自治團體 2. 管理公社 3. 農林水協동 4. 당해 都賣市場 또는 당해 都賣市場으로 移轉되는 市場에서 農水産物을 去來하는 商人과 그 商人團體 5. 都賣市場法人 6. 기타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都賣 		<p>수·합병 직전년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p>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07.7.6>.</p> <p>③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7.6></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市場의 管理·운영을 위하여 特別히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者</p> <p>③公共出資法人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상 株式會社에 關한 規定을 적용한 다. <개정 2007.1.3></p> <p>④公共出資法人은 「상법」 第317條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를 한 날에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분 다. <개정 2007.1.3></p> <p>第25條 (仲都賣業의 許可)①仲都賣人의 業務를 하고자 하는 者는 部類別로 當해 都賣市場의 開設者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p> <p>②다음 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者는 仲都賣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3></p>		<p>④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2항의 要件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申請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6></p> <p>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各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6></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나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p> <p>2.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免除되지 아니한 者</p> <p>3. 第8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都賣業의 許可가 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p> <p>4. 都賣市場法人의 株主 및 任·職 員으로서 당해 都賣市場法人의 業務와 競合되는 仲都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p> <p>5.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任員이 있는 法人</p> <p>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p>		<p>1. 개인의 경우</p> <p>가. 이력서</p> <p>나. 은행의 잔고증명서</p> <p>2. 법인의 경우</p> <p>가. 정관</p> <p>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p> <p>다. 임원의 이력서</p> <p>라.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③法人인 仲都賣人은 그 任員이 第2項第5號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任員을 지체없이 解任하여야 한다.</p> <p>④仲都賣人은 다른 中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去來參加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農水産物의 競賣 또는 入札에 不參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p> <p>⑤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都賣業의 許可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許可有效期間을 設定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中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5조의2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p> <p>제25조의3 (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第26條 (仲都賣人の 業務範圍 等の 特例)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仲都賣人은 都賣市場안 에 설치된 共販場(이하 "都賣市場 共販場"이라 한다)에서도 그 業務</p>		<p>제19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법 제25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신설 2007.7.6></p> <p>제19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7.6></p> <p>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2.5cm×3.5cm) 3매</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를 행할 수 있다.</p> <p>第27條 (競賣士의 任免)①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에서의 公正하고 迅速한 去來를 위하여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 이상의 競賣士를 두어야 한다.</p> <p>②競賣士는 競賣士資格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者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 또는 	<p>제1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p> <p>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경매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게 위탁한다. <2007.7.2. 신설></p> <p>②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장소 및 방법 등 시험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7.7.2. 신설></p> <p>제17조의3(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시험은 제1차 선택형</p>	<p>2.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p> <p>제20조(경매사의 임면) ①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되, 품목별·도매시장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이를 정한다.</p> <p>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7.6></p> <p>제21조 삭제 <2007.7.6></p> <p>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교부) ①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시</p>

農畜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宣告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p> <p>4. 당해 都賣市場의 市場都賣人, 仲都賣人, 產地流通人 또는 그 任·職員</p> <p>5.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6.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p> <p>③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p> <p>④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p>	<p>필기시험(이하 “제1차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실기시험(이하 “제2차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류별로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2007.7.2. 신설></p> <p>② 제1차시험은 도매시장 관계 법령, 경매실무, 유통상식, 상품성평가로 하며, 제2차시험은 모의경매 진행으로 한다. <2007.7.2. 신설></p> <p>③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른 부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의 경매실무와 유통상식을 면제한다. <2007.7.2. 신설></p> <p>④ 시험은 격년으로 실시한다. 다만,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인력 충원의 필요</p>	<p>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7.6></p> <p>② 경매사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자격증을 교부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6></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7조의2 (경매사 자격시험)①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시험방법·자격증의 교부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28條 (競賣士의 業務 등)①競賣士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p> <p>1. 都賣市場法人이 上場한 農水産</p>	<p>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실시 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2007.7.2. 신설></p> <p>⑤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며,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2007.7.2. 신설></p> <p>제17조의4(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2007.7.2. 신설></p> <p>제17조의5(경매사 자격증의 교부 등)</p>	

農畜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物에 대한 競賣優先順位의 결정 2. 都賣市場法人이 上場한 農水産物의 價格評價 3. 都賣市場法人이 上場한 農水産物의 競落者의 결정 ②競賣土는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7.1.3></p> <p>第29條 (産地流通人の 登録) ① 農水産物を 蒐集하여 都賣市場에 出荷하고자 하는 者は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部類別로 都賣市場의 開設者에게 登録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경매사자격증을 교부하고 경매사자격등록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2007.7.2. 신설> ②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의 실시 및 경매사자격증의 교부에 필요한 실비를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007.7.2. 신설></p>	<p>제23조(실비의 징수)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경매사자격증의 교부에 필요한 실비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개정 2007.7.6></p> <p>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 生産者團體가 구성원의 生産物을 出荷하는 경우</p> <p>2. 都賣市場法人이 第31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買受한 農水産物을 上場하는 경우</p> <p>3. 仲都賣人이 第31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非上場農水産物을 賣買하는 경우</p> <p>4. 市場都賣人이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賣買하는 경우</p> <p>5. 기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p> <p>②都賣市場法人, 仲都賣人 및 이들의 株主 또는 任·職員은 당해 都賣市場에서 産地流通人の 業務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第1項의 登録申請이 있는 때에는 正當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p>		<p>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5조(산지유통인등록의 예외)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p> <p>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된다.</p> <p>④產地流通人は 登録된 都賣市場에서 農水産物の 出荷業務외의 販賣·買受 또는 仲介業務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都賣市場의 開設者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을 하여야 하는 者가 登録을 하지 아니하고 產地流通人の 業務를 행하는 때에는 都賣市場에의 出入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p> <p>⑥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產地流通人の 公정한 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30조 (출하자 신고)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p>		<p>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p> <p>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p> <p>제25조의2(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에 다음</p>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위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p>		<p>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6></p> <p>1. 개인의 경우</p> <p>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p> <p>나. 증명사진(2.5cm×3.5cm) 3매</p> <p>2.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p> <p>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07.7.6></p> <p>제25조의3(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7.7.6></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31條 (受託販賣의 원칙) ① 都賣市場에서 都賣市場法人이 행하는 都賣는 出荷者로부터 委託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買受하여 都賣할 수 있다.</p> <p>② 仲都賣人은 都賣市場法人이 上場한 農水産物외의 農水産物の 去來를 할 수 없다. 다만,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都賣市場法人이 上場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農水産物 기타 이에 준하는 農水産物로서 그 品目과 기간을 정하여 都賣市場의 開設者로부터 許可를 받은 農水産物の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第35條第1項, 第38條, 第39條, 제</p>		<p>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7.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3. 당해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경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40조 제2항·제4항, 第41條(第2項 但書의 規定을 제외한다), 第42條第1項第1號·第3號 및 第81條의 規定은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仲都賣人의 去來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1.3></p>		<p>4.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정 거래 물량확보 등이 어려운 경우로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p> <p>5.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위하여 매수하는 경우</p> <p>②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수량·원산지·매수가격·판매가격 및 출하자</p> <p>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p>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32條(賣買方法) 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에서 農水産物을 競賣 또는</p>		<p>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3. 기타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 <p>제28조(매매방법의 예외) ① 법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入札의 방법으로 賣買한다. 다만, 다른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에서 價格이 결정되어 바로 入荷된 農水産物을 上場하여 賣買하는 경우 등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定價 또는 隨意賣買를 할 수 있다.</p>		<p>장 법인이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7.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 거래하는 경우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4. 반입량이 적고 거래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서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품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으로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p> <p>가.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품목</p> <p>나.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물품</p> <p>6.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을 출하자의 동의 하에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경우</p> <p>7.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가격·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p> <p>8. 해양수산부장관이 거래방법·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p> <p>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출하자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p> <p>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산물</p> <p>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p> <p>다. 동일한 출하자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p>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동일한 포장규격·등급규격을 갖춘 농산물을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파렛트에 적재하여 출하하는 경우</p> <p>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 거래를 하는 농수산물</p> <p>마.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겸영사업으로 위탁받은 농수산물</p> <p>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매한 물품의 품목·수량·금액 및 출하자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사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33條 (競賣 또는 入札方法) ① 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에 上場한 農水産物을 受託된 順位에 따라 競賣 또는 入札의 方法으로 最高價格 提示者에게 販賣하여야 한다. 다만, 出荷者가 書面으로 제출하는 등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要件을 갖추어 去來成立最低價格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價格 미만으로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효율적인 流通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大量入荷品·標準規格品·豫約出荷品 등을 우선적으로 販賣하게 할 수 있다.</p> <p>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競賣 또는</p>		<p>제29조(거래성립최저가격의 제시요건)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거래성립최저가격의 제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하자 및 거래성립최저가격 등이 기재될 것 2. 출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농수산물의 판매과정에 임회한다는 뜻이 기재될 것 <p>제30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량입하품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入札의 방법은 電子式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舉手手指式·記錄式·書面入札式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公開競賣의 實現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品目別·都賣市場別로 競賣方式을 제한할 수 있다.</p> <p>④삭제 <2007.1.3></p>		<p>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p> <p>3. 예약출하품</p> <p>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p> <p>5.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p> <p>제31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34條 (去來의 特例)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入荷量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去來가 어려운 경우 등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하여 都賣市場法人의 경우에는 仲都賣人·賣買參加人외의 者에게, 市場都賣人의 경우에는 都賣市場法人·仲都賣人에게 販賣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p>		<p>2. 기타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32조 삭제 <2007.7.6></p> <p>제33조(거래의 특례)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7.6>.</p> <p>1. 도매시장법인의 경우</p> <p>가. 당해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남은 농수산물이 있는 경우</p> <p>나.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다.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p> <p>2. 시장도매인의 경우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p> <p>1. 판매한 물품의 품목·수량·금액·출하자 및 매수인</p> <p>2. 판매한 사유</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35條 (都賣市場法人의 營業制限)</p> <p>① 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외의 場所에서 農水産物의 販賣業務를 하지 못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1.3></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p> <p>④ 都賣市場法人은 農水産物의 販賣業務외의 사업을 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農水産物의 선별·포장·가</p>		<p>제33조의2(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7.6></p> <p>②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7.7.6></p> <p>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경영)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製氷)·보관·후숙(後熟)·저장·수출입 등의 사업을 경영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공·제빙(製氷)·보관·후숙(後熟)·貯藏·輸出入 등의 사업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兼營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p>⑤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경합 또는 과도한 경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7.1.3></p>	<p>17조의6(도매시장법인의 경영사업의 제한)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경영사업으로 수탁·매수한 농수산물을 법 제32조, 법 제33조제1항,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출하자와의 업무경합 또는 과도한 경영사업으로 인한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영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7.7.2></p>	<p>호까지의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7.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이 300퍼센트 이하일 것 2.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부채총액×100)이 90퍼센트 이하일 것 3.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 4. 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할 것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35조의2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p> <p>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1. 제1차 위반 : 보완명령</p> <p>2. 제2차 위반 : 1개월 금지</p> <p>3. 제3차 위반 : 6개월 금지</p> <p>4. 제4차 위반 : 1년 금지</p> <p>② 제1항에 따라 경영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07.7.2></p>	<p>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p> <p>①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신설 2007.7.6></p> <p>1.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p> <p>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p> <p>3. 경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36條 (市場都賣人의 지정) ① 市場都賣人은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部類別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指定有效期間을 設定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場都賣人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法人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p> <p>1. 任員중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p>	<p>제18조(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p> <p>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은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p>	<p>내용</p> <p>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p> <p>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7.7.6></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p> <p>2. 任員중 당해 都賣市場안에서 市場都賣人의 業務와 競合되는 都賣業 또는 仲都賣業을 하는 자가 없을 것</p> <p>3. 任員중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나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가 없을 것</p> <p>4. 任員중 第8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場都賣人의 指定取消處分의 原因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者가 없을 것</p> <p>5.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要件을 충족할 것</p> <p>③ 市場都賣人은 그 任員이 第2項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p>	<p>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개정 2007.7.2></p> <p>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07.7.2></p> <p>6.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개정 2007.7.2></p> <p>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수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정하여</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任員을 지체없이 解任하여야 한다.</p> <p>④ 市場都賣人의 指定節次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36조의2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p> <p>第37條 (市場都賣人의 營業) ① 市場都賣人은 都賣市場에서 農水産物을 買受 또는 委託받아 都賣하거나 賣買를 仲介할 수 있다. 다만,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去來秩序의</p>	<p>야 한다.</p>	<p>제34조의3(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신설 2007.7.6></p> <p>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과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品目과 기간을 정하여 市場都賣人이 農水産物을 委託받아 都賣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p> <p>②市場都賣人은 당해 都賣市場의 都賣市場法人·仲都賣人에게 農水産物을 販賣하지 못한다.</p>		<p>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p> <p>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래한 내역을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③ 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표준정산서에 거래량·거래방법을 허위기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38條 (受託의 거부금지 등)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은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入荷된 農水産物의 受託 또는 委託받은 農水産物의 販賣를 거부·기피하거나 去來關係人에게 부당한 差別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p>	<p>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8조제5호에서 “그 밖에 환경개선 및 규격출하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2></p> <p>1. 농림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p>	<p>3.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④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 거래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의 품목 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다. <개정 2007.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p>제38조의2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p>	<p>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第39條 (賣買農水産物の 引受 등) ①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으</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로부터 農水産物을 買受한 者는 賣買가 성립한 즉시 그 農水産物을 引受하여야 한다.</p> <p>②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買受人이 正當한 사유없이 買受한 農水産物의 引受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買受人의 부담으로 그 農水産物을 일정기간 保管하거나 그 이행을 催告하지 아니하고 그 賣買를 解除하여 다시 賣買할 수 있다.</p> <p>③第2項의 경우 差損金이 생긴 때에는 당초의 買受人이 이를 부담한다.</p> <p>第40條 (荷役業務) ①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안에서의 荷役業務의 효율화를 위하여 荷役體制의</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개선 및 荷役機械化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荷役費의 節減으로 出荷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p> <p>②都賣市場의 開設者가 業務規程으로 정하는 規格出荷品에 대한 標準荷役費(都賣市場 안에서 規格出荷品을 販賣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荷役費를 말한다)는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 이 이를 부담한다.</p> <p>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3></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④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 은 都賣市場안에서의 荷役業務에 대하여 荷役專門業體 등과 用役契 約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p>第41條 (出荷者에 대한 代金決濟) ①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 은 委託받은 農水産物이 賣買된 때 에 그 代金の 전부를 出荷者에게 즉시 決濟하여야 한다. 다만, 代 金の 지급방법에 관하여 都賣市場 法人 또는 市場都賣人和 出荷者사 이에 特約이 있는 때에는 그 特約 에 의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金決濟 는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 人이 표준송품장과 판매원표를 확인 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出荷者</p>		<p>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 여 별도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 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하자는 송품장을 작성하여 도 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출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은 출하자에게 받은 송품장의 사 본을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 3.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에게 발급하여 出荷者가 이를 별도의 精算窓口に 제시하고 代金を 受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都賣市場法人의 경우에는 出荷者에게 代金を 직접 決濟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표준송품장·판매원표·표준정산서·代金決濟의 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p>		<p>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창구에 발급하고, 정산창구에 대금 결제를 의뢰</p> <p>4. 정산창구에서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표준정산서의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p> <p>제37조(도매시장법인의 직접대금결제)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법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37조의2(표준송품장의 사용) ① 법 제41조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출하자가 제1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을 이용하기 쉽도록 이를 보급하고, 기재요령을 배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표준송품장을 제출받은 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제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 ①</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경매에 사용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품명·등급·수량·경락가격·매수인·담당경매사 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다.</p> <p>②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품명·등급·수량·가격·매수인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다.</p> <p>③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p> <p>④ 입하물품의 부패·손상이나 판매원표의 분실·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⑤ 판매원표의 관리에 필요한 세</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부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p> <p>제38조(표준정산서)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사용하는 표준정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준정산서의 발행일자 및 발행자명 2. 출하자명 3. 출하자 주소 4. 거래형태(매수·위탁·중개) 및 매매방법(경매·입찰, 정가·수의매매) 5. 판매내역(품목·품종·등급별 수량·단가 및 거래단위당 수량 또는 중량), 판매대금총액 및 매수인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42條 (手數料 등의 徵收制限) ① 都賣市場의 開設者, 都賣市場法人, 市場都賣人 또는 仲都賣人은 다음 각 호의 金額외에는 어떠한 名목 으로도 金錢을 徵收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3></p> <p>1.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都賣市場 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으로부터 都 賣市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 소한의 費用으로서 徵收하는 都賣 市場의 使用料</p> <p>2.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도매시장 의 시설 중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p>		<p>6. 공제내역(위탁수수료·운임선금금· 하역비·선별비·쓰레기유발부담금 등 비용) 및 공제금액총액</p> <p>7. 정산금액</p> <p>8. 송금내역(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p> <p>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 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사용료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 설중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6></p> <p>1.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할 사 용료의 총액이 당해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35조제2항</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産部令이 정하는 施設에 대하여 使用者로부터 徵收하는 施設使用料</p> <p>3.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이 農水産物の 販賣를 委託한 出荷者로부터 徵收하는 去來額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委託手數料</p> <p>4. 市場都賣人 또는 仲都賣人이 農水産物の 賣買를 仲介한 경우에 이를 賣買한 者로부터 徵收하는 去來額의 一定率에 해당하는 仲介手數料</p> <p>5.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都賣市場의 쓰레기發生抑制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品目中 非規格出荷物量에 대하여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荷者·</p>		<p>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한 물량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당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할 것</p> <p>②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의 부수시설중 농산물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사무실 및 도체등급판정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都賣市場法人·市場都賣人·仲都賣人·賣買參加人으로부터 徵收하는 쓰레기誘發負擔金</p> <p>②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使用料 및 手數料의 料率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p> <p>③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負擔金은 農水産物의 規格出荷促進, 쓰레기減量化 및 荷役機械化 등을 위한 사업의 財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p>		<p>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6></p> <p>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곡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2.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3.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4.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되지 아니한다)</p> <p>5. 화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p> <p>6. 약용작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p> <p>④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 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3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7.6></p> <p>⑤ 법 제4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p> <p>⑥ 법 제4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42조의2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p>		<p>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p> <p>⑦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추·무·마늘·양배추·파·양파 2. 기타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품목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에 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第4章 農水産物共販場 및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 등</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43條 (共販場의 開設)①생산자단체와 公益法人이 共販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6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고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3></p> <p>②第19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p>제19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승인 신청) 법 제43조에 따라 농수산물 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려는 자는 해당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판장 개설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p>	<p>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절차) ①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장의 개설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판장의 업무규정. 다만,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서 이를 정하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운영관리계획서 3.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 <p>②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③ 공판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44條 (共販場의 去來關係者) ① 共販場에는 仲都賣人·賣買參加人·產地流通人 및 競賣士를 둘 수 있다.</p> <p>② 共販場의 仲都賣人은 共販場의 開設者가 지정한다. 이 경우 仲都賣人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第2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③ 農水産物을 蒐集하여 共販場에 出荷하고자 하는 者는 共販場의 開設者에게 產地流通人으로 登錄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產地流通人의 登錄 등에 관하여는 第29條第1項 但書·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④ 共販場의 競賣士는 共販場의 開設者가 任免한다. 이 경우 競賣</p>		<p>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6></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士의 資格基準 및 業務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第2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p> <p>第45條 (共販場의 운영 등) 共販場의 운영 및 去來方法 등에 관하여는 第31條 내지 第34條, 제38조·제39조·제40조, 第41條第1項 및 第4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共販場의 규모·去來物量 등에 비추어 이를 準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共販場의 경우에는 開設者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去來方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p>第46條 (都賣市場共販場의 운영 등</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에 관한 特例) ① 都賣市場共販場의 운영 및 去來方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5조제2항 내지 제5항, 제35조의2, 제38조 및 제39조 내지 제42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p> <p>② 都賣市場共販場의 仲都賣人에 관하여는 第25條, 第31條第2項·第3項, 第42條 및 第7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③ 都賣市場共販場의 產地流通人에 관하여는 第2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④ 都賣市場共販場의 競賣士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第2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p> <p>⑤ 都賣市場共販場의 運營主體에 관하여는 第70條의 規定에 의한</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農林水協 등의 流通子會社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第47條 (民營都賣市場의 開設) ① 民間人 등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地域에 民營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3></p> <p>② 民間人 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許可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民營都賣市場開設許可申請書에 業務規程과 運營管理計劃書를 첨부하여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第17條第5項 및 第7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規程 및</p>		<p>제41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절차)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영도매시장의 업무규정 2. 운영관리계획서 3. 당해 민영도매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運營管理計劃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p> <p>④第19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p>第48條 (民營都賣市場의 運營 등) ①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는 仲都賣人·賣買參加人·產地流通人 및 競賣士를 두어 직접 運營하거나 市場都賣人을 두어 이를 運營하게 할 수 있다.</p> <p>② 民營都賣市場의 仲都賣人은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가 지정한다. 이 경우 仲都賣人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第2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③ 農水産物을 蒐集하여 民營都賣市場에 出荷하고자 하는 者는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에게 產地流</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通人으로 登錄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產地流通人의 登錄 등에 관하여는 第29條第1項 但書·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④ 民營都賣市場의 競賣士는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가 任免한다. 이 경우 競賣士의 資格基準 및 業務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第2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p> <p>⑤ 民營都賣市場의 市場都賣人은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가 指定한다. 이 경우 市場都賣人의 指定 및 營業 등에 관하여는 第36條第2項 내지 第4項,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 내지 제42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p> <p>⑥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가 仲都賣人·賣買參加人·產地流通人 및 競</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賣士를 두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및 去來方法 등에 관하여는 第31條 내지 第34條, 제38조, 제39조 내지 제42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民營都賣市場의 규모·去來物量 등에 비추어 당해 規定을 準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民營都賣市場의 경우에는 그 開設者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및 去來方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p>第49條 (產地販賣制度의 확립) ① 農林水協동 또는 公益法人은 生産地에서 出荷되는 主要品目の 農水産物에 대하여 產地競賣制를 실시하거나 系統出荷를 확대하는 등 生</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産者保護를 위한 販賣對策 및 選別·포장·貯藏施設의 확충 등 産地流通對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p> <p>② 農林水協등 또는 公益法人은 第33條의 競賣 또는 入札方法에 따라 창고경매·포전(圃田)경매 또는 선상(船上)경매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p>제42조(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법 제 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창고경매나 포전경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산농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창고 또는 포전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품질·생산량 및 시중가격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6></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50條 (農水産物集荷場의 設置·운영)①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農水産物을 大量消費地에 직접 出荷할 수 있는 流通體制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農水産物集荷場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p>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水産物集荷場의 효과적인 运营과 生産者의 出荷便宜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立地選定과 道路網의 開設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运营하고 있는 農水産物集荷場중 第6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販場의 施設基準을 갖춘 集荷場을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共販場으로 运营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p>제2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p> <p>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협등,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관련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출하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7.7.2></p> <p>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은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51조 (農水産物産地流通센터의 設置·운영 등) ① 第51條 (農水産物産地流通센터의 設置·운영 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水産物의 選別·포장·規格出荷·加工·販賣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農水産物産地流通센터를 設置하여 运营하거나 이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게 敷地確保 또는 施設物設置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國家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运营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1.3></p> <p>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运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p>		<p>제42조의2(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充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运营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7.7.6></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52條 (農水産物流通施設의 편의제공)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그가 設置한 農水産物流通施設에 대하여 生産者團體 또는 農林水協中央會나 公益法人의 이용요청이 있는 때에는 施設利用·面積配定 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第53條 (圃田賣買의 契約) ①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圃田)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 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의</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圃田賣買의 契約은 特約이 없는 한 買受人이 당해 農産物을 契約書에 기재된 搬出約定日부터 10日 이내에 搬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解除된 것으로 본다. 다만, 買受人이 搬出約定日이 경과되기 전에 搬出遲延事由와 搬出豫定日을 書面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農業協同組合과 그 中央會는 圃田賣買에 있어서 標準契約書의 樣式을 정하여 이를 契約書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勸獎할 수 있다.</p> <p>④ 農林部長官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生産者 및 消費者의 보호나 農産物의 價格과 需給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對象品目·地域과 申告期間</p>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등을 정하여 契約當事者에게 圃田 賣買契約의 내용을 申告하도록 할 수 있다.</p> <p>第5章 農산물가격안정기금<개정 2004.12.31></p> <p>第54條 (基金의 設置) 政府는 農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第5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需給과 價格安定을 도모하고 流通構造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農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개정 2004.12.31></p> <p>第55條 (基金의 造成)①基金은 다음 각 호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개정</p>	<p>제21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부장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2007.1.3></p> <p>1. 政府의 出捐金</p> <p>2. 基金運用收益金</p> <p>3. 제9조의2제3항·제16조제2항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납입 되는 금액</p> <p>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出捐金</p> <p>②農林部長官은 基金의 運營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基金 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p> <p><개정 2006.12.30></p> <p>第56條 (基金의 運用·관리)①基金은 企業會計原則에 따라 農林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p> <p>②삭제 <2004.12.31></p> <p>③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運用·관리에</p>	<p>제22조(기금의 運用·관리사무의 위 임·위탁)</p> <p>①삭제<2001.3.31></p> <p>②농림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기금의 運用·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p>	

農畜産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관한 業務의 일부를 국립종자관리소장과 農水産物流通公社長에게 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p>④基金의 運用·관리에 관하여 이法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57條 (基金의 用途)①基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融資 또는 貸出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農産物의 價格調節과 生産·出荷의 獎勵 또는 調節 2. 農産物의 輸出促進 3. 農産物의 保管·관리 및 加工 4.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의 	<p>농수산물유통공사장에게 위탁한다.<개정 2001.3.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의 수입·지출 2.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규정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p> <p>5. 농산물의 商品性 제고</p> <p>6. 기타 農林部長官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基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支出한다. <개정 2004.12.31, 2007.1.3></p> <p>1. 第7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지원</p> <p>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第121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 및 당해 사업의 관리</p> <p>3. 基金이 관리하는 流通施設의 設置·취득 및 운영</p>	<p>제23조(기금의 지출대상사업) 법 제 5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7.2></p> <p>1. 농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저온유통·유통정보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p> <p>2.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홍</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p> <p>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농산물의 流通構造改善 및 價格安定과 種子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融資를 받을 수 있는 者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農水産物流通公社로 하고, 貸出을 받을 수 있는 者는 農林部長官이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施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者로 한다. <개정 2004.12.31></p> <p>④基金을 融資 또는 貸出받은 者는 融資 또는 貸出을 할 때에 指定한 目的외의 目的에 그 融資金 또는 貸出金을 사용할 수 없다.</p> <p>第58條 (基金의 會計機關)①농림부장</p>	<p>보·지도·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p> <p>3.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종자의 품종육성·개발, 우수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연구</p> <p>4.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p> <p>5.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검사·분석시설 지원</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2.12.30></p> <p>②농림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30></p> <p>③農林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任命한 때에는 監査院·財政經濟部長官 및 韓國銀行總裁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p> <p>④삭제 <2002.12.30></p> <p>第59條 (基金의 損費處理) 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이 생긴 때에는 이를 基金에서 損費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2007.1.3></p> <p>1. 第9條, 第13條 및 「종자산업법」 第121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缺損金</p> <p>2. 借入金의 利子 및 基金運用상 필요한 經費</p> <p>第60條 (基金의 運用計劃)①農林部長官은 會計年度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p> <p>②第1項의 基金運用計劃에는 다음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基金의 收入·支出에 관한 사항</p> <p>2. 融資 또는 貸出의 目的, 對象者, 金利 및 기간에 관한 사항</p> <p>3. 기타 基金運用상 필요한 사항</p> <p>③第2項第2號의 融資期間은 1年이</p>		

農畜産物流通 및 价格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施設資金의 融資등 資金의 使用目的상 1年 이내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0조의2 (여유자금의 운용)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 그 밖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 <p>第61條 (決算報告) 農林部長官은 會計年度마다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 다음 年度 2月末日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4조 삭제 <2002.12.30></p> <p>제25조 삭제 <2002.12.30></p>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6章 農水産物流通機構의 整備 등</p> <p>第62條 (整備基本方針 등)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水産物の 원활한 需給과 流通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한 農水産物流通機構整備基本方針(이하 "基本方針"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告示할 수 있다.</p>	<p>제26조 삭제 <2002.12.30> 제27조 삭제 <2002.12.30> 제28조 삭제 <2002.12.30> 제29조 삭제 <2002.12.30> 제30조 삭제 <2002.12.30> 제31조 삭제 <2002.12.30> 제32조 삭제 <2007.7.2></p>	<p>제4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6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미달하거나 去來物量에 비하여 施設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施設整備에 관한 사항 2.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施設의 改替 및 移轉에 관한 사항 3. 仲都賣人 및 競賣士의 價格造作 방지에 관한 사항 4. 生産者와 消費者保護를 위한 流通機構의 奉仕競爭體制의 확립과 流通經路의 단축에 관한 사항 5. 運營實績이 不振하거나 休業중인 都賣市場의 整備 및 都賣市場 法人이나 市場都賣人의 交替에 관한 사항 6. 小賣商의 施設改善에 관한 사항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63條 (地域別 整備計劃)①市·道知事は 基本方針이 告示된 때에는 그 基本方針에 따라 地域別 整備計劃을 수립하고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p> <p>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別 整備計劃의 내용이 基本方針에 不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实效性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일부를 修正 또는 補完하여 승인할 수 있다.</p> <p>第64條 (類似都賣市場의 整備)①市·道知事は 農水産物の 公正去來秩序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農水産物類似都賣市場의 整備를 위하여 類似都賣市場區域을</p>		<p>제43조(유사도매시장의 정비) 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 있는 유사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지정하고,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區域안의 農水産物都賣業者의 去來方法改善·施設改善·移轉對策 등에 관한 整備計劃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p> <p>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整備計劃에 따라 類似都賣市場區域안에 都賣市場을 開設하고, 그 區域안의 農水産物都賣業者를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p>③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整備計劃의 내용을 修正 또는 補完하게 할 수 있으며, 整備計劃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시·광역시 2. 국고지원에 의하여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지역 3. 기타 시·도지사가 농수산물의 공공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p>② 유사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사도매시장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 2. 제1호의 지역안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의 개선방안 3. 유사도매시장의 시설개선 및 이전대책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책을 시행하는 때의 대상자의 선발기준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65條 (市場의 開設·整備命令)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基本方針을 効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正하는 바에 따라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統合·移轉 또는 閉鎖를 명할 수 있다.</p> <p>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水産物의 원활한 需給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한 地域에 都賣市場이나 共販場을 開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地域을 管轄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나 農林水協동 또는 公益法人에 대하여 都賣市場이나 共販場의 開設을 명할 수 있다. <개</p>	<p>제33조(시장의 정비명령)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비교·검토하여 조건이 불리한 시장을 통합·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2년간의 거래실적과 거래 추세 2. 입지조건 3. 시설현황 4. 통합·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손실의 정도 <p>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정 2007.1.3> ③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 令으로 인하여 발생한 都賣市場·共 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 또 는 都賣市場法人의 損失에 관하여 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相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p> <p>第66條 (都賣市場法人의 代行) ① 都 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法人이 販賣業務를 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를 代行하거나 管理公社 또는 다른 都賣市場法人으로 하여금 代 行하게 할 수 있다.</p>	<p>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 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고자 하 는 때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하거 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p>	

농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賣市場法人의 業務를 代行하는 者에 대한 業務處理基準 기타 代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이를 定한다.</p> <p>第67條 (流通施設의 개선 등)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水産物의 원활한 流通을 위하여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나 都賣市場法人에 대하여 農水産物의 販賣·輸送·보관·貯藏施設의 개선·整備를 명할 수 있다.</p> <p>②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이 保有하여야 하는 施設의 기준은 部類別로 그 地域의 人口 및 去來物量 등을 고려하여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定한다.</p>		<p>제44조(시설기준) ① 법 제67조제2항의 規定에 依하여 부류별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이 保有하여야 하는 시설의 最低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개설허가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축산부류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제1항의 規定에 依한 시설외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依한 도축장 또는 도계장 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p>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68條 (農水産物小賣流通의 개선)① 農林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生産者와 消費者의 보호 및 商去來秩序를 확립하기 위한 農水産物小賣段階의 합리적 流通改善에 대한 施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p> <p>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달성하기 위하여 農水産物의 仲都賣業·小賣業, 生産者와 消費者의 直去來事業, 生産者團體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가 운영하는 農水産物直販場, 小賣施設의 現代化 등을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한다.</p> <p>③農林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小賣業者 등</p>	<p>제34조(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p>	<p>제45조(농수산물소매유통의 지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간의 직거래사업 2. 농수산물소매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기타 농수산물직거래 및 소매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이 農水産物의 流通改善과 공동이익의 增進 등을 위하여 協同組合을 設立하는 경우에는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의 이용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第69條 (綜合流通센터의 設置)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綜合流通센터를 設置하여 生産者團體 또는 專門流通業體에 그 운영을 委託할 수 있다.</p> <p>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綜合流通센터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게 敷地確保 또는 施設物設置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農林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綜合流通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機能을 수행할 수 있도록 綜合流通센터를 운영</p>		<p>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지역의 농수산물유통시설현황, 종합유통센터의 건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운영자의 선정계획, 세부적인 운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하는 者 또는 이를 이용하는 者에 게 그 운영방법 및 出荷農漁家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p> <p>④農林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流通센터를 운영하는 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받아 綜合流通센터를 운영하는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出荷農漁家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⑤綜合流通센터의 設置, 施設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p>		<p>영방법과 물량처리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및 운영수지분석</p> <p>3. 부지·시설 및 물류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p> <p>4. 기타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유통센터건설의 타당성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p> <p>②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지구입·시설물설치·장비확보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p> <p>③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하는 종합유통센터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①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이 조에서 "운영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수협등(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2.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p> <p>②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위탁자"라 한다)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수집능력·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및 농수산물유통에 대한 경험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p> <p>③ 위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시설</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70條 (流通子會社의 設立)①農林水協 등은 農水産物流通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綜合流通센터, 都賣市場共販場의 운영 기타 流通事業을 수행하는 별도의 法人(이하 "流通子會社"라 한다)을 設立·운영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子會</p>		<p>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應당하기 爲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의 총액은 당해 종합유통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자는 이용료 外에는 어떠한 名목으로도 金錢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8조(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법제70조의 規定에 의하여 유통자회사가 수행하는 "기타 유통사업"의 범위는 다음 各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수협등이 설치한 농수산물 직판장 등 소비지유통사업 2. 농수산물의 상품화촉진을 위한 규격화 및 포장개선사업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社는 「상법」상의 會社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p> <p>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流通子會社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71조 삭제 <2007.1.3></p> <p>第72條 (流通情報化의 촉진)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流通情報의 원활한 蒐集·처리 및 傳播를 통하여 農水産物의 流通效率向上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農水産物流通情報化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事業을 추진하기 위하여 情報基盤의 整備, 情報化를 위한 教育 및</p>	<p>제35조 삭제 <2007.7.2></p>	<p>3. 기타 농수산물의 운송·저장사업 등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p> <p>제49조 삭제 <2007.7.6></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弘報事業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第73條 (財政支援) 政府는 農水産物 流通構造改善과 流通機構의 육성을 위하여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 안에서 融資하거나 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p> <p>第74條 (去來秩序의 유지)①누구든지 都賣市場에서의 정상적인 去來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衛生·環境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에서의 去來秩序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 法을 위반하는 者를 團束하게 할 수 있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團束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第75條 (教育訓練 등)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水産物의 流通改善을 촉진하기 위하여 競賣士·仲都賣人 등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流通從事者에 대하여 教育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訓練을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p>	<p>제36조(위법행위의 단속)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단속지침을 정할 수 있다.</p>	<p>제50조(교육훈련 등) ① 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매시장법인,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공판장(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및 시장도매인의 임·직원 2. 경매사 3. 중도매인(법인을 포함한다) 4. 산지유통인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이 정하는 機關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5.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6. 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인 7. 농수산물의 저장·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8. 기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임용 또는 임명되었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는 그 임용·임명 또는 허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76條 (實態調査 등)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都賣市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法人 등으로 하여금 都賣市場에 대한 實態調査를 하게 하거나 운영·관리의 指導를 하게 할 수 있다.</p> <p>第77條 (評價의 실시)①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관리와 도매</p>		<p>③교육훈련의 위탁을 받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매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1조(실태조사 등)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는 범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p> <p>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한다.</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p> <p>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를 綜合하여 中央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와 施設規模, 去來額 등을 고려하여 都賣市場法人, 市場都賣人, 仲都賣人에 대하여 施設使用面積의 調整·差等支援 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p> <p>④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評價結果에 따라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의 開設者에 대하여 不振事項의 시정을 명하거나 都賣市場의 開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평가기준 및 평가방법등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개설자 등에게 통보 2. 평가대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의하여 자체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해당 협동조합의 자체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중앙평가를 위한 유통실태조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者로 하여금 都賣市場法人, 市場都賣人 또는 都賣市場共販場에 대한 施設使用面積의 調整·差等支援 등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⑤第1項 및 第2項의 評價에 관한 사항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p>		<p>관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 평가의 결과 및 유통실태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중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p> <p>② 기타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평가 실시 및 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p> <p>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7.6></p> <p>1.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78條 (審議會 등의 設置)①都賣市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農林部長官 소속하에 都賣市場制度改善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都賣市場의 開設者 소속하에 市場管理運營委員會(이하 "委員會"</p>		<p>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이 중앙평가결과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7.6></p> <p>제53조(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구성 등) 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라 한다)를 둔다.</p> <p>②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都賣市場의 去來制度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都賣市場의 評價에 관한 사항 3. 都賣市場從事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農林部長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委員會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審議한다. <개정 2007.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都賣市場의 去來制度 및 去來方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手數料·市場使用料·荷役費 등 제반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都賣市場 出荷品의 安全性 提高 및 規格化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都賣市場의 去來秩序의 확립에 		<p>②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임직원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각 1인 3. 도매시장의 개설자소속 공무원 (관리공사의 임원을 포함한다)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 농림어업관련단체·소비자보호관련단체 등의 임직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농림어업관련 대학의 교수 기타 도매시장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관한 사항</p> <p>5.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p> <p>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p> <p>7. 기타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④審議會 또는 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p>		<p>③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p> <p>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p>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①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 소속하에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찰자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p>③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6조의2(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①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7.7.2></p> <p>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7.7.2></p> <p>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7.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하자를 대표하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도매시장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힘이 풍부한 자</p> <p>4.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7.7.2></p> <p>⑤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7.2></p> <p>⑥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p> <p>제36조의3(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p> <p>①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 간에 발</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정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7.7.2></p> <p>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 조정을 실시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7.7.2></p> <p>③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7.2></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第7章 補則</p> <p>第79條 (보고)①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에 대하여 그 財産 및 業務執行狀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②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法人·市場都賣人에 대하여 記帳事項, 去來內譯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農水産物の 價格과 需給安定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仲都賣人 또는 産地流通人에 대하여 業務執行狀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第80條(檢査)①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 칙</p> <p style="text-align: right;">제55조(검사의 통지) ①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開設者は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業務와 이에 관련된 帳簿 및 財産狀態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p> <p>②都賣市場의 開設者は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市場管理者의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都賣市場 法人 및 市場都賣人이 비치하고 있는 帳簿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p> <p>③第74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職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p> <p>第81條 (命令)①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都賣市</p>		<p>시장의 개설자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범위 및 기간과 검사공무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장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범위 및 기간과 검사직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에 대하여 業務規程의 변경, 業務處理의 개선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p> <p>②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 法人 및 市場都賣人에 대하여 業務處理의 개선 및 市場秩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p> <p>③농림부장관은 基金에서 融資 또는 貸出받은 者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p> <p>第82條(許可取消 등)①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민영도매</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시장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설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도매시장을 개설하였거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2. 제17조제3항,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달리 도매시장을 운영한 경우 3. 제40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p>②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法人, 市場都賣人 또는</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都賣市場共販場의 開設者(이하 "都賣市場法人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7.4.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때 2. 「축산법」 제35조제4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上場한 때 3. 제23조제2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때 4.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海임하지 아니한 때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때</p> <p>6.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때</p> <p>7.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때</p> <p>8.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때</p> <p>9.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p> <p>10.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행한 때</p> <p>11.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p> <p>12.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사업을 겸영한 때</p> <p>13. 제3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 실을 공시한 때</p> <p>14. 제36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위 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 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 니한 때</p> <p>15.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p> <p>16.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 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 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때</p> <p>17.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 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p> <p>18.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 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p>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니한 때</p> <p>19.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p> <p>20.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한 때</p> <p>2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때</p> <p>22. 제7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p> <p>24.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25.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부장</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③제7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운영실적이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각각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1.3></p> <p>④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경매사가 제28조제1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할 수 있다. <신설 2007.1.3></p> <p>⑤都賣市場의 開設者는 仲都賣人(第25條 및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仲都賣人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産地流通人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하거나 仲都賣業의 許可 또는 産地流通人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2.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찰에 불참한 때</p> <p>3.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p> <p>4.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때</p> <p>5.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때</p> <p>6.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p> <p>7.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때</p> <p>8. 제7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9. 제8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p> <p>⑥第1項 내지 제5항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農林部 습 또는 海洋水産部 습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p> <p>第83條(課徵金)①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法人등이 第82條第2項에 해당하거나 仲都賣人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業務停止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業務의 정지가 당해 業務의 利用者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業務의 정지에 갈음하여 都賣市場法人등에</p>		<p>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 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7.7.6>.</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개는 1億원 이하, 仲都賣人에게는 1千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7.1.3></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賦課基準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p> <p>④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p>	<p>제36조의4(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 8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7.7.2></p>	<p>제57조 삭제 <2007.7.6></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7.1.3></p> <p>第84條 (청문)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등의 지정 또는 承認取消 2. 제82조제5항의 規定에 의한 仲都賣業의 許可 또는 産地流通人の 登録取消 <p>第85條 (權限의 위임 등)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에 의한 權限중 그 일부를 所屬機關의</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權限을 市場管理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p> <p>1. 第29條 (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產地流通人의 登錄과 都賣市場에의 出入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措置</p> <p>2. 第7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市場都賣人·仲都賣人 또는 產地流通人의 業務執行狀況 報告命令</p>	<p>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 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시·광역시외의 지역에 개설하는 지</p>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방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의 개설구역으로의 편입(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구역편입을 제외한다)</p> <p>2.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폐쇄 및 개설명령</p> <p>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기관의 장</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第8章 罰則</p> <p>第86條 (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7.1.3></p>	<p>에게 위탁한다.<개정 2007.7.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9조(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 2.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의 업무집행상황 보고명령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 都賣市場의 開設區域이나 共販場 또는 民營都賣市場이 開設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의 管轄區域안에서 第17條 또는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農水産物의 都賣를 目的으로 都賣市場 또는 民營都賣市場을 開設한 者</p> <p>2.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을 받지 아니하거나 指定有效期間이 경과한 후 都賣市場法人의 業務를 행한 者</p> <p>3. 第25條第1項(第4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仲都賣人의 業務를 행한 者</p> <p>4. 第29條第1項(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p>		

農畜水産物流通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産地流通人の 業務를 행한 者</p> <p>5.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賣市場외의 場所에서 農水産物の 販賣業務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農水産物の 販賣業務외의 事業을 兼營한 者</p> <p>6.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를 받지 아니하거나 指定有効期間이 경과한 후 都賣市場안에서 市場都賣人の 業務를 행한 者</p> <p>7.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共販場을 開設한 者</p> <p>8.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處分을 받고도 그 業을 계속한 者</p>		

農畜産物流通 및 價格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87條 (罰則) 第1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推薦申請을 할 때에 정한 用途외의 用途로 輸入農産物을 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88條 (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7.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賣市場法人의 業務와 競合되는 都賣業 또는 仲都賣業을 영위한 者 2. 제23조의2제1항(제25조의2,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하여 인수·합병을 한 자</p> <p>3. 第25條第4項(第4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賣買參加人의 去來參加를 방해하거나 正當한 사유없이 集團的으로 農水産物의 競賣 또는 入札에 불참한者</p> <p>4.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競賣士를 任免한者</p> <p>5. 第29條第2項(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産地流通人의 業務를 행한者</p> <p>6. 第29條第4項(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荷業務외의 販賣·買受 또는 仲介業務를 행한者</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7.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허위로 위탁받은 자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8. 第3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하여 農水産物을 委託받아 去來한 者</p> <p>9.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당해 都賣市場안의 都賣市場法人 또는 仲都賣人에게 農水産物을 販賣한 者</p> <p>10. 第42條第1項(第31條第3項, 第45條 前段, 第46條第1項·第2項 또는 第48條第5項·第6項 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手數</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料 등 費用을 徵收한 者</p> <p>11. 第6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에 위반한 者</p> <p>第89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6條 내지 第8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p> <p>第90條 (過怠料)①제10조제2항의 規定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7.1.3></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에 處한다. <개정 2007.1.3></p> <p>1. 삭제 <2007.1.3></p> <p>2. 삭제 <2007.1.3></p> <p>3. 第74條第2項 또는 第80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團束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p> <p>4. 第79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p>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7.1.3></p> <p>1.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2. 第29條第5項(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賣市場 또는 都賣市場共販場의 出入</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制限 등의 措置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者</p> <p>3. 第74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賣市場에서의 정상적인 去來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衛生·環境의 유지를 저해한 者</p> <p>4. 第7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p> <p>5. 第81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p> <p>第91條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①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p>	<p>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또는 市長(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7.1.3></p> <p>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 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p>	<p>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7.7.2></p> <p>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p>	<p>제5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8</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여 이를 徵收한다.</p> <p>附則 <제6223호,2000.1.28></p> <p>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第13條, 第54條 및 第57條의 規定은 각각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p> <p>2. 第31條第3項중 第41條第2項 本文을 準用하는 부분과 第40條第2</p>	<p>또는 海陽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부 칙 <제16834호, 2000.6.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 내지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p> <p>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p>	<p>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p> <p>부 칙 <제1366호, 2000.6.2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농업관측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구성된 농업관측협의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농업관측위원회로 본다.</p>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項의 規定은 각각 2002年 1月 1日 부터 施行한다.</p> <p>3. 第22條 本文의 規定에 따라 中央都賣市場에 市場都賣人을 두는 사항은 中央都賣市場의 去來體系 및 施設의 整備狀況과 地方都賣市場의 運營實績 등을 고려하여 2004年 1月 1日부터 2年の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할 수 있다.</p> <p>第2條 (地方公社 및 公共出資法人의 都賣市場 管理業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都賣市場의 管理業務를 하도록 한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 및 公共出資法人은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場管理者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p>	<p>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④농촌진흥청장은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65호, 2001.3.27></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 내지 제19조, 제24조 내지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p> <p>②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의4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54조"로 한다.</p> <p>③인삼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4항중 "인삼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 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第3條 (蒐集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者에 登錄한 蒐集商은 第29條 第1項(第44條第3項 및 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產地流通人으로 登錄한 것으로 본다.</p> <p>第4條 (農水産物물류센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물류센터는 第6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農水産物綜合流通센터로 본다.</p> <p>第5條 (農水産物都賣市場法人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水産物都賣市場法人協會(이하 이 條에서 "協會"라 한다)는 그 地位의 承繼에 관하여 總會의 議決을 거쳐 主務官廳에 申告를 한 때</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p> <p>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5조제2항중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7182호,2001.3.31></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한다.</p> <p>제30조를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1495호,2005.6.28></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339호,2006.6.9></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제1564호, 2007.7.6></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에는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으로 본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協會는 지체없이 그 解散登記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이 擬制되는 社團法人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p> <p>③第1項의 경우 종전의 協會의 財産 및 權利·義務는 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이 擬制되는 社團法人이 이를 承繼한다.</p> <p>第6條 (地域農業協同組合 등에 관한 經過措置) 第2條第5號·第5條第2項·第6條第1項 및 第9條第3項의 規定중 地域農業協同組合, 地域畜産業協同組合 및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과 農業協同組合中央會는 法律第6018號 農業協同組合法 施行日 前日까지는 農業協同組合, 畜産業</p>	<p>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로 한다.</p> <p>부 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 2002.12.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p>	<p>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協同組合 및 人蔘協同組合과 그 中央會로 본다.</p> <p>第7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行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p> <p>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 및 第13條를 각각 削除한다.</p> <p>②流通團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2條第2號 目중 "農水産物물류센터"를 "農水産物綜合流通센터"로 한다.</p> <p>③流通産業發展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4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 관한</p>	<p>생략</p> <p>⑭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p> <p>⑮내지 <28>생략</p> <p>제6조 생략</p> <p>부 칙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8877호, 2005.6.23></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p>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法律에 의한 農水産物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 및 農水産物綜合流通센터</p> <p>第9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 관한 法律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축산법) <제6699호,2002.5.13></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중 "자조금"을 "자조금(축산물</p>	<p>시행한다.</p> <p>②(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두는 사항에 관한 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6223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5년 7월 1일을 말한다.</p> <p>부 칙</p> <p>(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9507호,2006.6.12></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p> <p>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 基金出納公務員, 基金出納擔當任員,</p>	<p>부 칙<제20148호, 2007.7.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징금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農畜産物流通 및 价格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基金出納員"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채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 행위 담당임원·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p> <p>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채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p> <p>②농림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채무관 또</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는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p> <p><20>내지 <31>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7275호,2004.12.31></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본다.</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3조 (수산부문 기금의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하고 있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중 수산부문의 채고자산과 채권·채무중 시설자금을 제외한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 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수산발전기금이 승계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하는 금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된 채권(債權)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60조제2항제2호</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 금리 및 기간 등의 조건으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용자된 것으로 본다.</p> <p>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漁業協定체결에따른漁業人등의지원및水産業發展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p> <p>4의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p> <p>4의3. 수산물의 보관·관리</p>		

農畜産物流通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糧穀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의2제2항중 “農水産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法律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p> <p>③人蔘産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제3항중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p> <p>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農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조제1항중 "水産 業協同組合"을 각각 "수산업협동조 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한다. ④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p> <p>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 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0조제1항 중 "基金管理基本法 第 5條"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25>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8107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農水産 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일부</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 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한다.</p> <p>②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7조 생략</p> <p>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p> <p>⑤農産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5조제2항중 "財政融資特別會計·韓</p>		

農畜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國銀行"을 "한국은행"으로 한다.</p> <p>⑥내지 <17>생략</p> <p>제9조 생략</p> <p>부칙 <제8178호,2007.1.3></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8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7조 생략</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農水産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畜産法 第28條第4項"을 "「축산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9조 생략</p>		

<농안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6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

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처분대상자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1년간의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 최근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 부과하는 과징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

연간 거래액	1일 과징금액
100억원 미만	40,000원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80,000원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30,000원
3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190,000원
4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240,000원
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300,000원
6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350,000원
7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410,000원

800억원 이상 900억원 미만	460,000원
9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520,000원
1천억원 이상 1천500억원 미만	680,000원
1천500억원 이상	900,000원

나. 시장도매인

연간 거래액	1일 과징금액
5억원 미만	4,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00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3,000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1,000원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68,000원
7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95,000원
90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	123,000원
110억원 이상 130억원 미만	150,000원
13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178,000원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205,000원
20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	270,000원
250억원 이상	680,000원

다. 중도매인

연간 거래액	1일 과징금액
5억원 미만	4,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00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3,000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1,000원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68,000원
7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95,000원
90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	123,000원
110억원 이상	150,000원

[별표 2] <개정 2007.7.2>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아래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2배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90조제1항	800만원
나. 법 제74조제2항 또는 법 제80조제1항·제2항에 따른 단속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90조제2항제3호	500만원
다.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90조제2항제4호	300만원
라.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0조제3항제1호	50만원
마. 법 제29조제5항(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90조제3항제2호	50만원
바. 법 제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	법 제90조제3항제3호	100만원
사.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90조제3항제4호	100만원
아. 법 제81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90조제3항제5호	100만원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1~3, 별지 1~7>

[별표 1] <개정 2007.7.6>

농수산물도매시장 · 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 (제44조제1항관련)

부류별		양 곡	청 과			수 산			축 산			화훼	약용 작물
시설	도 시 인구별	-	30만 미만	30만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	30만 미만	30만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	30만 미만	30만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	-	-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대 지		1,650	3,300	8,250	16,500	1,650	3,300	6,600	1,320	2,640	5,280	1,650	1,650
건 물		660	1,320	3,300	6,600	660	1,320	2,640	530	1,060	2,110	660	660
필 수 시 설	경매장(유개)	500	990	2,480	4,950	500	990	1,980	170	330	660	500	500
	주 차 장	500	330	830	1,650	170	330	660	170	330	660	330	330
	냉 장 실					17 (20톤)	30 (40톤)	50 (60톤)	70 (80톤)	130 (160톤)	200 (240톤)		
	저 빙 실					17 (20톤)	30 (40톤)	50 (60톤)					
	오 물 처 리 장	30	30	70	100	30	70	100	70	130	200	30	30
	위 생 시 설 (수세식화장실)	30	30	70	100	30	70	100	30	70	100	30	30
	사 무 실	30	30	50	70	30	50	70	30	70	100	30	30
	하주대기실· 출하상담실	30	30	50	70	30	50	70	30	70	100	30	30

부류별	양 곡	청 과	수 산	축 산	화 휘	약 용 작 물
부수 시설	상온창고, 중도매인점포, 중도매인사무실	저온창고, 상온창고, 가공처리장, 재발효 및 추열실, 중도매인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소각시설, 농산물품질관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상온창고, 가공처리장, 제빙시설, 염장조, 염장실, 중도매인점포, 중도매인사무실, 소각시설, 용융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식육운반차량, 중도매인사무실, 축산물위생검사시설 및 사무실, 도체 등급판정시설 및 사무실, 부산물처리시설, 농산물품질관리실, 부분육가공처리시설	저온창고, 상온창고, 중도매인점포, 중도매인사무실	상온창고, 중도매인점포, 중도매인사무실
기타 시설	가. 회의실, 경비실, 기계실 등 나. 금융기관의 점포 다.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는 처리능력을 말한다. 필수시설중 "사무실"은 당해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공판장의 사무실을 말한다. 도매시장법인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경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수시설중 "중도매인점포"·"중도매인사무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필수시설에 "시장도매인점포"를 추가한다.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도매시장의 경우 필수시설에 "시장도매인점포"를 추가하되,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장소(중도매인의 영업장소 등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와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수시설 또는 기타시설은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여건에 따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충분한 주차장·차량진입도로 및 상하차대와 상·하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인구는 개설허가 또는 승인신청당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의 공판장·민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자치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청과부류를 취급하는 공판장·민영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청과부류시설기준의 50퍼센트를 감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민영도매시장·공판장이 청과부류와 기타부류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청과부류의 시설기준만을 적용한다. 수산부류중 활어류·패류·해조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건해조류 및 젓갈류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냉장실 및 제빙실을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설기준은 기준시설의 50퍼센트를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축산부류중에서 조류 및 난류만을 취급하는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축산부류시설기준의 50퍼센트를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산지에 설치되는 공판장의 경우 위의 시설기준에서 50퍼센트를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산지에 설치되는 수산물공판장은 위의 시설기준에서 80퍼센트를 감하여 적용할 수 있고, 주차장·사무실·하주대기실·출하상담실을 필수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표 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제46조제3항관련)

구 분	기 준
부 지	20,000㎡이상
건 물	10,000㎡이상
시 설	1. 필수시설 가. 농수산물의 처리를 위한 집·배송시설 나. 포장·가공시설 다. 저온저장고 라. 사무실·전산실 마. 농산물품질관리실 바. 거래처주재원실 및 출하주대기실 사. 오·폐수시설 아. 주차시설 2. 편의시설 가. 직판장 나. 수출지원실 다. 휴게실 라. 식당 마. 금융기관의 점포 사.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비 고

1. 편의시설은 지역여건에 따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지 및 건물면적은 취급물량과 소비여건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에서 50퍼센트까지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07.7.6>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56조 관련)

1.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 다.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
-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해당 법조문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호	경 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승인)취소

2. 「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관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2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3.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3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4. 법 제23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5.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요건을 기한 내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4호	지정취소	-	-
6.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4호	경 고	지정취소	-
7.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5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8.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6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9.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7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0.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8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1.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9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2. 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0호	주 의	경 고	업무정지 1개월
13. 법 제3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을 출하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0호	주 의	경 고	업무정지 10일
14.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1호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5.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2호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6.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3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7.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8.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 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때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4호	주 의 경 고 지정취소 주 의	경 고	업무정지 10일
19.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2항제14호	경 고	지정취소	-
20.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법 82조 제2항제1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1.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때	법 82조 제2항제16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2.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법 82조 제2항제17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2항제18호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24.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2항제19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5.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한 때	법 82조 제2항제20호	경 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6.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법 82조 제2항제2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7.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2항제22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8.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법 82조 제2항제23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9.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2항제24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30.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82조 제2항제2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비고 : 「축산법」 제41조에 따른 처분 등의 요청권자가 일정 기간의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제2호의 처분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요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법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5항제1호	경 고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2. 법 제25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때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1호	주 의 경 고 허가취소 주 의	경 고	업무정지 10일
3. 법 제25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때	법 82조 제2항제14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5항제1호	경 고	허가취소	-
5.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때 가. 주동자 나. 단순가담자	법 82조 제5항제2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0일	허가취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	법 82조 제5항제3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7.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때	법 82조 제5항제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8.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가.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한 때 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다.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때 라.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마.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사용,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때 사.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5항제6호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업무정지 15일 경 고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9.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법 82조 제5항제7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10.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5항제8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법 82조 제5항제9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다. 산지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 업무 외에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때	법 제82조 제5항제4호	경 고	등록취소	-

라.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를 문란하게 한 때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법 제82조 제4항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1개월
		경 고	업무정지15일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15일	업무정지3개월	업무정지6개월

[별지 제1호서식]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 신청서		인수·합병 구분	처리기간
			30일
인수합병법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 :)
	상 호	자본금	
	소 재 지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	
	도매시장법인명	직원수	
법인수합병법인	전년도사업실적	백만원	
	인수·합병사유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호	(전화 :)	
인수합병인	소 재 지	자본금	
	도매시장법인명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	
	전년도사업실적	직원수	
	피인수·합병사유		
수법합병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호	자본금	
	소 재 지	직원수	
	도매시장법인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인수·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합병 직전년도와 합병·피합병 도매시장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210mm×297mm(중질시 60g/m²(제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사 진 (2.5x3cm)	매매참가인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참가시장명				
사 업 자 등록 번호				
거래 품목				
<p>「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p> <p>년 월 일</p> <p>신 청 인 (인)</p> <p>○ ○ 시장 귀하</p>				
<p><첨부서류></p> <p>1. 개인의 경우</p> <p>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p> <p>나. 증명사진 (2.5cm×3.5cm) 3매</p> <p>2.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p>				

210mm×297mm(중질지 60g/m²(제활용품))

경매사 임면 신고서

임명명경매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득일		취급품목	
면직경매사			임명일자		전화번호	
			임명사유			
면직명경매사	면직사유	성명		생년월일		
		자격득일		취급품목		
		면직일자		전화번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매사 임면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명 :

대표이사 : (인)

○○○장관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제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제 회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위서			
<p>※ 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p>			
① 수험번호	※ 기재하지 마세요.		② 응시부류
③ 성 명	(한글)	④ 주민등록 번호	청과 <input type="checkbox"/> 수산 <input type="checkbox"/> 축산 <input type="checkbox"/> 화훼 <input type="checkbox"/> 양곡 <input type="checkbox"/> 약용작물 <input type="checkbox"/>
⑤ 소 속	(한자)	⑥ 직 위 (직 급)	-
⑦ 기존 경매사 자격 취득자 자격증 번호 (현재 경매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만 기록)		(부 류 :)	
⑧ 연 락 처	전화번호	자 택	() -
		사 무 실	() -
		핸 드 폰	() -
	주 소 (우편물수령 가능지)	(-)	
(폴질하는 곳)			
사 진 (3cm×4cm)			
사 진 (3cm×4cm)			
<p>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시험을 무효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응 시 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p>			

수험표			
사 진 (3cm×4cm)			
성 명	홍 길 동		
응시부류	청과 <input type="checkbox"/> 수산 <input type="checkbox"/> 축산 <input type="checkbox"/> 화훼 <input type="checkbox"/> 양곡 <input type="checkbox"/> 약용작물 <input type="checkbox"/>		
수험번호	※ 기재하지 마세요.		
주민등록 번호	-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width: 80%;"> <tr> <td style="width: 50%;">접 수 인</td> <td style="width: 50%;"></td> </tr> </table>		접 수 인	
접 수 인			
<p>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p>			

297mm×210mm (중질지60g /m²)

응시위서 작성 요령

□ 문서양식

- 한글 A4, 용지방향 : 넓게

□ 응시위서 작성

응시위서는 자필 한글로 검정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4cm 규격의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3매 부착
 - 응시위서 : 사진 이면을 벗기지 말고 부착(뒷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기재)
2. 수험번호 ① : 기재하지 않음(수험표 동일)
3. 응시부류 ② : 응시하려는 해당 부류 □에 √ 표시
4. 성 명 ③ : 정자로 기재하되, 한글과 한자로 기입
5. 주민등록번호 ④ : 주민등록증의 번호 기재
6. 소속 및 직위 ⑤⑥ : 현재 소속된 법인 및 직위 기입
7. 기존 경매사 자격 취득자 자격증 번호 ⑦ : 기 취득한 경매사 자격증 번호 및 부류 기입
8. 연 락 처 ⑧ : 연락 가능 전화번호 및 우편물 수령 가능 주소 기입
9. 확 인 : 기재사항을 확인 점검 후 응시자란에 기재일자와 성명을 적고 날인함(서명 가능)

□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 . . () ~ . . () (평일 09:00~17:00)
단,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그 밖에 시험 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우편접수 : 수취할 자의 성명, 주소,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표 첨부
 - 응시료 : 현금, 자기앞수표, 소액환(현금은 방문접수 시만 가능)

□ 경매사 시험 추진 일정

- 응시위서접수 ⇒ 시험실시 ⇒ 이의신청접수 ⇒ 합격자발표 ⇒ 합격자 소양교육실시 ⇒ 자격증교부

주 의 사 항

1. 수험표를 받는 즉시 수험번호와 사진 위의 압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수험표에 접수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2. 수험표는 주민등록증과 함께 필기시험 및 실기평가 시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함
3.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서부착 사진과 동일 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 전일까지 재교부 받아야 함
4. 응시자는 소속 회사의 근무복을 착용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호출기를 가지고 입실할 수 없음
5. 필기도구는 컴퓨터용 수정 사인펜을 사용하여 하며, 기타 필기도구 사용자는 무효로 처리함(컴퓨터 채점)
6. 합격자 발표 및 기타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at.or.kr)에 게시함

[별지 제5호서식]

경매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휴대폰 -

근무처 명칭 ()

소속 (근무부서) ()

직위 ()
직급 ()

취급부류 ()

신청사유 1. 분실 2. 훼손 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장 2. 사진 1매(3cm×4cm,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것) 1매	발급수수료	4,000원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사 진 (2.5x3.0cm)	출하자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성 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_____)		
칭 인	이메일 주소 (e-mail)			
	출하 예정 도매 시장			
취급 부류 (주 품 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나. 증명사진(2.5cm×3.5cm) 3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210mm×297mm(중질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표준 송 품 장

◆ 출하일시 : . . . ◆ 도착일시 : . . .

수 신 귀하

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거래형태	매 수	위 탁	중 개	
매매방법	경매 · 입찰	정가 · 수의 매매	※ 거래형태, 매매방법을 각각 기재	

원산지	품 목 및 품 종	품질인증 호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증번호 이력추적 관리번호	거래별 단 량	등급 및 수량				비고	
					특	상	중	하		계
합 계										
운 임	입금 : (원)		원정 (원)			차 량	화 스	기 사 명		
	주 소						전 펙			
출하자, 산지유통인	성 명	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 (인)			송금은행					
					송금계좌					
					예 금 주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 개 상대자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